



2018학년도 재외국민 모집요강

-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정원 외 2%)
-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승실대학교

송실대학교의 교육이념과 교육목적

① 교육이념(건학이념)

기독교정신에 바탕을 둔 **진리와 봉사**를 교육이념으로 한다.

② 교육목적

기독교정신과 민주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심오한 학술적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쳐 **인류의 번영과 국가, 사회 및 교회에 봉사할 지도자적 인재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본 모집요강의 모든 사항은 지원자에게 별도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며 수정사항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iphak.ssu.ac.kr) 공지사항에 게시하오니 원서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교는 기독교 정신을 기초로 설립된 대학으로, 건학이념에 따라 모든 학생은 소정의 기독교 과목과 채플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Contents

1. 전형일정	6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7
3. 지원자격	8
4. 지원자격 심사기준	9
5. 전형방법	13
6. 동점자 처리방법	13
7. 지원방법 및 절차	14
8. 전형료	15
9. 서류제출 및 수험생 유의사항	15
10.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 명단	17
11. 제출서류	18
12. 2021학년도 중고교 과정 해외이수자 (정원 외 2%) 변경 예고	20
▶ <별표1> 지원자 종합기록표	24
▶ <별표2> 외국학교 조사표	25
▶ <별표3> 외국학교 학력조회 동의서	26
▶ <별표4> 재정보증 서약서	27
▶ <별표5> 재직사실 조회 동의서	28
▶ 부서 전화번호 안내	29
▶ 교내 건물 배치도	30
▶ 교통편(지하철) 안내	31

대입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 주의사항

■ 복수지원 허용범위

- 수시모집 대학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함. 단,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제한 없이 복수지원 가능함
- 본교 내에서도 모든 전형 간에는 복수지원이 가능하나 고사일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지원하기 바람(동일전형에서 모집단위 복수지원 불가, 전형 간에 중복 합격 시 반드시 1개 전형에만 등록해야 함)
- 정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 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다른 모집단위 간 복수지원 가능

■ 복수지원 금지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총원합격자)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본교는 총원합격을 온라인으로 일괄발표함]
[수시 최초 및 총원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 불가]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음
 -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을 의미함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 정원 외 전형도 포함]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포함),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특별법에 의한 설립대학 : 카이스트, 경찰대학, 3군 사관학교, 광주과기원, 대구과기원, 한국예술종합대학 등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은 무효로 함

■ 이중등록 금지

- 모집 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 확인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함
-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에 있어서도 다수의 대학에 납부할 수 없음**(1개 대학에만 납부하여야 함)
 - 수시모집 예치금을 납부하는 것은 대학에 등록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예치금 납부 이후 이에 대한 사실을 포기할 수 없음

-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에 있어 다수의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하는 수험생은 지원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 사실을 취소할 수 있음(타 대학에 충원합격자는 충원 기간 중 '반드시' 환불 신청하여야 함!)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개별 대학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색·분석하여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한 자의 명단을 각 대학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대학은 해당자의 입학은 지체 없이 무효로 함
- 이중등록 금지 위반자는 입학(합격)을 취소함. 또한, 대학에 합격 통보를 받아 등록한 수험생이 타 대학에 충원 합격 통보를 받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후, 타 대학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

- 수시모집 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 기간 내에만 등록 처리하며,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 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 등록이란 문서 등록 또는 등록 확인 예치금을 납부한 상태를 의미함
-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대학 모집요강 공통 기재사항>

- 수시모집 지원·전형 방법과 관련한 사항

-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수험생들은 이를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함(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를 모두 포함하며, 산업대학·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한 모든 전형은 접수취소 처리됨

- 이중 등록 및 등록금 환불과 관련한 사항

-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 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 등록(예치)금 환불신청 관련 사항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iphak.ssu.ac.kr)에 추후 공지 예정
- 대입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입학(합격)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 자료에 주요사항 누락이나 허위나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함

1.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안내사항
인터넷 원서접수	2017.7.1.(토) 10:00 ~ 4.(화)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hak.ssu.ac.kr • www.jinhakapply.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1단계 전형료 (100,000원)
필답고사장 안내	2017.7.12.(수)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hak.ssu.ac.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필답고사	2017.7.14.(금)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시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증, 수험표 지참
1단계 합격자 발표	2017.7.18.(화)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hak.ssu.ac.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통보하지 않음 - 합격자 안내사항 필독
1단계 합격자 서류제출	2017.7.20.(목)~21.(금) 10:0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장소에 방문제출 (추후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계 전형료 (100,000원) 현금수납 - 제출서류 구비 (p.15~16 참조)
최초합격자 발표	2017.8.29.(화) 10:30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hak.ssu.ac.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통보하지 않음 - 합격자 안내사항 필독
등록 예치금 납부	2017.12.18.(월)~21.(목) 09:30~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지정은행 (09:30~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예치)금 납입고지서를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iphak.ssu.ac.kr)에서 직접출력하여 지정된 은행에 제출하고 등록 또는 지정계좌에 입금하고 등록 [필히 등록확인 할 것] - 16:00 이후, 토요일 및 공휴일은 등록받지 않음 - 개별통보하지 않음 - 합격자 안내사항 필독
총원 합격자 발표	2017.12.22.(금)~27.(수)		
잔여등록금 납부	2018.1.31.(수)~2.2.(금) 09:30~16:00		

※ 위의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연락하지 않고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iphak.ssu.ac.kr) 공지사항에 게시하오니 수시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수시모집 지원 6회 제한에 재외국민 전형도 포함되므로 유의해야 함

※ 지원자격 관련 서류심사 결과를 포함한 입학전형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대학명	모집단위	모집구분 및 모집인원		
			중·고교 과정 해외이수자	새터민,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인문	인문대학	기독교학과	2	모집인원 제한없음	
		국어국문학과	3		
		영어영문학과	4		
		중어중문학과	2		
		철학과	2		
	법과대학	법학과	2		
		국제법무학과	2		
	사회과학 대학	사회복지학부	4		
		행정학부	3		
		정치외교학과	3		
		정보사회학과	2		
		언론홍보학과	2		
	자연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2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2
			의생명시스템학부		2
공과대학		유기신소재·파이버공학과	2		
		건축학부 건축학·건축공학전공	2		
IT대학		컴퓨터학부	2		
		전자정보공학부	전자공학전공	2	
			IT융합전공	2	
		글로벌미디어학부	4		
		소프트웨어학부	2		
계			53	모집인원 제한없음	

※ 소프트웨어학부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으로부터 공학교육인증을 받고 있으며, 해당 학과(부) 입학자는 의무적으로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함

※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5년 과정임

※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에 해당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은 정원에 관계없이 본교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집함

3. 지원자격

공통학력 : 고등학교 졸업(2018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24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의 의미

: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1학년 1학기에 해당하는 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연속적으로 학업을 이수한 경우를 의미**하고, 국내와 외국 간에 전·편입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은 최대 1학기까지만 인정함 (**최소 23학기 이상 이수 필요, 또한, 이 과정에서 국내와 외국에서 중복 수학한 학기는 최대 1학기 까지만 제한적으로 외국에서 이수한 학기로 인정 가능하며, 총 재학학기에 추가로 산입하지 않음**)

※ 국내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하였더라도, 총 24학기(최소 23학기) 이수 자격 및 외국이수 학력요건에 미달할 경우 본 재외국민 전형에 지원할 수 없음 단,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함

※ 외국 검정고시(예 : 미국·캐나다의 GED, 중국의 자학고시 등)는 인정하지 않음

※ 국내 또는 외국 교육부로부터 학력취득이 비 인가된 학교는 인정하지 않음

※ 졸업예정자는 졸업일까지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함

※ 해당 국가의 학제상 학년도가 1개월이 낮은 국가(일본, 필리핀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외국학교 재학기간만을 예외적으로 인정함 (해당국의 2018학년도 3월 졸업예정자)

※ 지원자격 상세기준은 p.8 참조

※ 본인만 외국인 이거나, 부모 중 1인 이상이 한국국적을 보유한 외국인 지원자인 경우 '본인만 외국인' 또는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 외국인'으로 지원해야 함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순수외국인)은 본 전형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별도 실시하는 '순수외국인 전형'에 지원하기 바람

지원자격	자격요건	학력요건
외국영주 교포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한 교포의 자녀 [영주권이 없는 국가는 지원자격 없음]	[외국 이수 학력 요건]
외국근무 재외국민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재외국민 자녀 - 공무원 - 상사직원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	1. 고등학교 과정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재학한 자 2. 중·고등학교 과정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재학한 자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 포함] 3.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을 중·고등학교에서 재학한 자
기타 재외국민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하고 귀국한 재외국민 자녀 - 석·박사 학위취득 목적의 유학자 - 선교를 위해 파견된 자 - 외국 현지 취업자 - 자영업자 - 강의 및 연구 파견 교원(연구년은 제외)	※ 재학기간 관련 설명 : 재학기간 '1년' 이라 함은 해당국이 학기제인 경우 2개 학기, 3 Term제 인 경우 3개 Term, Quarter제 인 경우 4개 Quarter 전부를 의미함.
본인만 외국인 (기타 외국인)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에서 고교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자 [복수국적은 해당사항 없음]	외국 고등학교 과정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재학한 자
새터민(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새터민)	고교 학력 인정자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재외국민, 외국인)	외국에서 초, 중, 고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국적법 제6조 제 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외국 초, 중, 고교 졸업자

※ 본교가 제시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자격 미달로 처리하므로 반드시 확인할 것

1) 해외근무 공무원의 범위

-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2)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범위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다)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설치인증 · 허가되지 않았거나, 설치인증 · 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라)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 · 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마) 정부파견 의사 및 언론기관 특파원
※ 국내법인 소속으로서 외국법인과 상호계약에 의하여 해당 외국법인으로 파견된 임직원도 인정하나, 현지채용 또는 개인이 투자하여 외국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3)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가) 외국정부 : 해당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나) 국제기구 : 정부 간의 국제조약, 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단, 기타 비정부 간 또는 국제 단체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 제외)

4) 기타 재외국민(선교를 위해 파견된 자)의 범위

: 국내 관련기관(교회 또는 단체)에서 파송된 선교사의 자녀로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http://www.kncc.or.kr>) 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http://www.cck.or.kr>) 회원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의 자녀

4. 지원자격 심사기준

1) 외국학교 인정기준

- 가) 외국학교는 외국에 소재한 학교를 의미하며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학교는 해당되지 않음
- 나) 외국학교는 부모의 근무국(거주국) 내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
단, 부모가 근무하는 국가의 지역, 종교, 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는 그 내용을 심의하여 입시전형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학생의 제3국 수학을 인정함
- 다) 외국학교 과정은 해당국 교육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과정만을 인정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대학예비과정, 평생교육기관, 성인대학 등은 불인정)
- 라) 외국에서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과정이 포함된 정규 교육기관의 모든 교육과정을 수료, 졸업하고 총 재학기간을 만족할 경우에는 졸업학력을 인정
단,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기간 중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기간의 성적을 증명(성적표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학력 인정불가

마) 외국학교의 교육 연한은 현행 대한민국 학제인 초·중·고·대학(6-3-3-4) 학제를 기준으로 함.
6-3-3 학제가 아닌 학교에서 수학한 경우 해당학교의 학제를 확인할 수 있는 커리큘럼 및 학사일정표 제출

※ 학사일정표에는 해당 외국학교의 학제일정(학기시작 및 종료일, 방학시작 및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와 상응하는 홈페이지 출력물, 브로셔 등도 제출 가능(홈페이지 출력물 제출 시 해당 웹사이트 주소가 상세히 표기되어 있어야 함)

바) 외국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할 수 있음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 학제(12년제)에 맞추어 계산)

외국학교 과정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우리나라 학제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 12학년제에서 13학년제로, 또는 그 반대로 전학하여 연속으로 재학한 경우 불법이나 편법 소지가 없는 범위내에서 1개 학년 한도내에서 이수한 학년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음.

사) 외국의 1개 국가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함 (10년제~13년제 모두 해당)

아) 13년 학제의 외국에서 12학년 교육과정 이상을 연속으로 재학하여 수료한 경우, 국내고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함.

단 유치원, 어학연수(ESL) 과정이 포함된 경우, 해당기간은 인정하지 않으며, 총 재학기간에서 제외함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 재외국민, 외국인, 결혼이주민은 위에 해당하지 않음]

자) 학제로 인해 외국 고교 졸업 시에도 우리나라 12년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기간이 부족하게 된 지원자가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과정을 이수한 경우 해당 대학과정 이수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2) 외국근무 인정기준

가) 보호자의 외국근무가 종료되어 귀국할 때 자녀만 외국에 남아서 계속 학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지원 자격 취득을 위한 재학기간으로는 인정하지 않음

[해외근무 상사주재원의 경우, 해외지사 설치 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허가기간이 지난 근무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예 : 지원자가 외국고등학교 재학기간 1년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호자의 외국 근무가 종료되어 국내로 귀국하는 경우, 외국고등학교의 최소 재학 기준인 1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특례입학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나) 외국근무 공무원, 상사직원의 경우, 해외로 파견되어 상근한 경우만 해당되며, 유학(석·박사 과정은 제외), 교육·연수, 안식년, 출장 등의 목적으로 거주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3) 월반과 조기졸업은 인정하지 않음

[해외 1개 국가에서 초·중등 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결혼이주민은 해당국 교육법령 등에 근거하여 학제 상으로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 함(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 4) 같은 학년의 중복수학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외국학교로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학제 차이 등으로 인하여 중복수학한 것은 1개 학기(6개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외국학교 수학기간으로 인정함 [학교를 전·편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업공백(비는 학기)의 경우, 한국과 외국 간의 학제 차이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최대 1학기를 인정하며, 최소 23학기를 수료해야 지원자격을 인정함. 중복 수학한 학기로서 비는 학기를 대체인정하지 않음]
- 5) 국내에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 재학하고, 2학년 2학기 재학 중에 외국 소재 고등학교에 전·편입한 경우에는 모든 예외조항에도 불구하고 특례입학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6) 외국영주 교포 자녀 중 영주권이 없거나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한 국가는 외국영주 교포 자녀로서의 지원 자격이 없음
- 7) 이 모집요강에 기재되지 않은 지원자격과 관련된 사항은 본교 입시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름
- 9) 외국 재학 및 체류기간 기준표

재학형태	대 상	구 분	근무 기간	거주(영주) 기간	체류 기간	재학 기간
외국 고등학교 과정에 연속 2년 이상 재학하였거나 중·고등학교 과정을 연속 2년 이상 재학한 자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 포함)	외국영주 교포 자녀	교포인 부모	-	2년 이상	1년 이상	-
		교포의 자녀	-	2년 이상	2년 이상	2년 이상
	외국근무 재외국민 자녀	보호자(부 또는 모)	2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
		배우자	-	-	-	-
		자녀	-	2년 이상	2년 이상	2년 이상
	기타 재외국민 자녀	보호자(부 또는 모)	2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
		배우자	-	1년 6개월 이상	1년 이상	-
		자녀	-	2년 이상	2년 이상	2년 이상
	외국 중·고등학교 과정에 통산 3년 이상 재학한 자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 포함)	외국영주 교포 자녀	교포인 부모	-	3년 이상	1년 6개월 이상
교포의 자녀			-	3년 이상	3년 이상	3년 이상
외국근무 재외국민 자녀		보호자(부 또는 모)	3년 이상	3년 이상	1년 6개월 이상	-
		배우자	-	-	-	-
		자녀	-	3년 이상	3년 이상	3년 이상
기타 재외국민 자녀		보호자(부 또는 모)	3년 이상	3년 이상	1년 6개월 이상	-
		배우자	-	2년 3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상	-
		자녀	-	3년 이상	3년 이상	3년 이상

- ※ 외국 체류기간: '출입국 사실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 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 보호자는 부모 중 외국 근무자를 의미함
- ※ 외국근무 재외국민 자녀의 경우 배우자의 거주·체류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 보호자(영주권자의 경우 부모)의 해외 근무·거주(영주)기간 내에 지원자의 고교 재학기간 1년(2개 학기)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 보호자(영주권자, 기타 재외국민의 경우 부모)의 해외 체류기간 내에 지원자의 고교 재학기간 180일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 해외거주·체류기간은 각 지원자가 제출한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해외근무 확인서류(재직증명서 등)', '재학기간 증명서류(재학증명, 성적증명)'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산정함.

외국학교 수학기간 인정 / 불인정 사례

(제외: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 재외국민과 외국인, 결혼이주민, 새터민)

가. 인정 사례

학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재외국민 학력자격 인정여부
학 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학교																									인 정 (중복수학한 1학기 외국학교 수학하기로 인정)
외국학교																									
학 년	1		2		3		4		5		6		7		8		9		10		대학				재외국민 학력자격 인정여부
학 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학교																									인 정 (12년 기준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에서 수학시 인정)
외국학교 (10학년제)																						고1	고2	고3	
학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재외국민 학력자격 인정여부
학 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학교																									인 정 (13학년제 학교에서 이수한 9,10학년 -> 8,9학년 이수로 인정)
외국학교 (13학년제)																									
외국학교 (12학년제)																									

나. 불인정 사례

학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재외국민 학력자격 인정여부
학 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학교																									불인정 (월반 2개 학기 이상으로 23학기 미충족)
외국학교1																									
외국학교2																									

학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재외국민 학력자격 인정여부
학 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학교																									불인정 (미이수 학기 2회 이상)
외국학교1																									
외국학교2																									

학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재외국민 학력자격 인정여부
학 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학교																									불인정 [고등학교 과정 2개 학기(1년) 미만 이수]
외국학교																									

5. 전형방법

구분	전형방법		비고
재외국민 특별전형	1단계	국어 및 영어 필답고사	1단계 선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3배수
	2단계	지원자격 심사	

- 1) 모든 지원자는 필답고사를 응시해야 함 [모집인원의 3배수 이하로 지원한 모집단위의 지원자 및 정원 외 대상자(12년 이상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포함]
- 2) 1단계 합격자는 서류제출기한 내에 본교가 지정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에 서류일체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함. (제출서류는 서류접수일 현재 통상 3개월 이내에 발행, 단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외국에서의 재학/근무/거주가 종료된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이면 제출가능)

3) 전형별 세부사항

구분	1단계 필답고사	2단계 서류평가[서류접수]
전형대상	지원자 전원	1단계 합격자
고사장발표	2017.7.12.(수)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발표	-
전형일	2017.7.14.(금)	접수기간 : 2017.7.20.(목) - 7.21.(금)
전형장소	해당 고사장	추후공지
출제방식	국어, 영어 객관식	-
고사시간	총 90분	-
준비물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검은색 볼펜 또는 사인펜	제출서류, 신분증, 서류접수비(100,000원)

※ 필답고사 결사자 및 '0'점 취득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7.12.(수) 공지하는 수험생안내사항 참조

6. 동점자 처리방법

- 1) 필답고사 : 모집단위별로 동점자가 3배수를 초과할 경우 모두 선발
- 2) 최종 : ① 필답고사 점수가 높은 자
② 국어 점수가 높은 자
③ 고배점 다득점자
④ 외국소재 학교의 재학기간이 긴 자
[단, 고배점 다득점자로 동점자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만 해당]
⑤ 연소자

7. 지원방법 및 절차

원서접수 사이트 접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iphak.ssu.ac.kr 로 접속하여 원서 접수 배너를 클릭 또는 ◦ http://www.jinhakapply.com 에 접속하여 송실대학교 검색
↓	
회원가입 및 로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지원자 본인의 명의로 가입 (부모님 ID로 가입 시 정정 불가)
↓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접수관련 동의서 확인
↓	
원서작성 및 사진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하는 전형유형, 모집단위, 개인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누락·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최근 3개월 내 촬영한 증명사진(JPG파일)을 업로드
↓	
원서 입력사항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형료 결제 전 반드시 최종 작성 내용 확인 (결제가 끝난 뒤 기재사항 수정 절대 불가)
↓	
1단계 전형료 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제 후에는 입학원서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1단계 전형료는 아래의 사항 이외에는 반환되지 않음
↓	
수험표 출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확인 및 수험표 출력
↓	
필답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답고사 응시(지원자 전체) ◦ 1단계 합격자 발표
↓	
서류제출 및 2단계 전형료 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합격자는 심사서류 방문제출 및 2단계 전형료 결제
↓	
서류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심사(자격여부)
↓	
최초 합격자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합격자 등록(등록 예치금 및 잔여등록금 납부)
↓	
충원 합격자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원 합격자 등록(등록 예치금 및 잔여등록금 납부)

※ 전형료를 납부한 후 천재지변, 질병, 기타 사고 등의 사유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형료 환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해당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 (원서접수 수수료 제외) 환불할 수 있음. 단, 고사일(필답고사) 전에 환불 신청을 해야 함. (원서접수 기간 내에 위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모두 환불)

※ 개인정보 자료 수집 및 활용 동의

- ① 입학원서 접수 시 입력한 정보는 입시 관련 업무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본교에 입학원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접수 시 입력한 정보를 입시와 관련된 업무(SMS, ARS업체, 출신 고등학교, 입시 관련 유관기관 등등) 및 본교 교육·연구·행정 대학생활동 및 정보 안내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②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추가연락처(2개 이상), 모집단위(지망학과), 학교정보(최종학력구분, 재학/출신 고교명, 졸업(예정)연도, 고교전화번호) 등

8. 전형료

1) 단계별 전형료

전형 단계	전형료
1단계 전형료 (인터넷 접수 시 전형료 결제)	100,000원
2단계 전형료 (심사서류 제출 시 전형료 결제)	100,000원

2) 전형료 일부환불

환불대상자	환불금액
서류심사 자격미달자(재외국민 자격미달자)	70,000원

※원서접수 시 기재한 계좌로 환불처리

9. 서류제출 및 수험생 유의사항

가. **서류접수는 1단계 필답고사 합격자에 한하여 반드시 『방문접수』를 시행함**

나. **외국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국·공립학교 발행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 사립학교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 제출 시

1) **학교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단, p.16에 있는 재외 한국학교에서 발급한 증명서의 경우, 별도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 불필요]

2)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이 속한 국가가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됨

가)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국의 정부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원본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사립학교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는 공증받은 후에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신청 할 수 있음)

나) 아포스티유협약, 발급기관 및 가입국 안내에 관하여서는 아래의 <참고>를 확인하시기 바람

다.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제출서류는 서류접수일 현재 통상 3개월 이내에 발행, 단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외국에서의 재학/근무/거주가 종료된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이면 제출 가능)하여야 하나,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 발행기관 또는 해당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원본대조를 필한 사본을 제출하거나, 서류 접수 시 원본과 사본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원본대조 확인해드립니다

- 라. 학력 및 자격관련 서류의 사본 제출자는 합격 후 반드시 **원본으로** 다시 제출해야 함
- 마. 영어 이외의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 바. 국내학교 및 재외 한국학교의 경우 성적, 재학증명서 대신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함
(단, 학교생활기록부에 재학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사. 제출서류상의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국 법원이나 공관장이 발행하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아. 최종합격자 중 졸업예정자는 입학일 전까지 고교 **졸업증명서**를 입학처로 제출하여야 함
- 자. 본 요강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에도 지원자격 등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학전형에 중요한 사항을 위·변조, 허위증명서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밝혀질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합격(입학)을 취소함
- 카. 합격자는 서류의 진위여부를 발급기관에 조회하여 상이할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합격(입학)을 취소함
- 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입학전형 평가성적 및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된 경우라도 지원자의 입시성적이 저조하여 수학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생국가가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

<참고>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2016.08.30.기준) [문의처 : 외교부 영사서비스과(02-2100-7600)]

지역	국가명
아시아, 대양주	호주, 중국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셜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16개국)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기스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52개국)
북미	미국 (1개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 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27개국)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11개국)
중동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4개국)
계	111개국

10.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 명단 (2016년 4월 기준)

국가명	학교명
일본(4개교)	동경한국학교, 교토국제학교, 오사카금강학교, 오사카건국한국학교
중국(12개교)	북경한국국제학교, 천진한국국제학교, 상해한국국제학교, 무석한국학교, 소주한국학교, 연대한국학교, 칭다오청운한국학교, 대련한국국제학교, 선양한국국제학교, 연변한국학교, 홍콩한국국제학교, 광저우한국학교
대만(2개교)	타이베이한국학교, 까오슝한국국제학교
베트남(2개교)	하노이한국국제학교,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사우디아라비아(2개교)	리아드한국학교, 젓다한국학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싱가포르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태국	방콕한국국제학교
필리핀	필리핀한국국제학교
파라과이	파라과이한국학교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한국학교
브라질	브라질한국학교
러시아	모스크바한국학교
이란	테헤란한국학교
이집트	카이로한국학교
계	15개국, 32개교

11. 제출서류(1단계 합격자에 한함)

제 출 서 류 명	외국영주 교포자녀	외국근무 재외국민 자녀	본인만 외국인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비 고
초·중·고등학교 졸업[(예정),재학]증명서 및 전 과정 성적증명서	● (학생)	● (학생)	● (학생)	● (학생)	1.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관할 지방자치 단체장 발행 (구청,군청)] 2.국내고등학교 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시,도 교육청 발행]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생활기록 부 사본 - 국내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위 증명서 중 1가지 이상 제출] 3.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 4.교육보호대상자 확인서 (제출가능자는 모두 제출)	국내학교 및 재외한국학교 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전입,전출일 명시) 제출
보호자 재직(경력)증명서 [외국근무(채류)기간 명시]		● (보호자)				본사 (인사권자) 발행
해외직접투자승인서 [또는 해외지사설치신고서 (수리서)]		● (보호자)				상사직원만 제출 (필수, 미제출시 접수불가)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해외거주사실 확인서)	● (부,모,학생)	● (보호자,학생)				
여권 사본	● (부,모,학생)	● (보호자,학생)	● (학생)	● (학생)		
출입국 사실증명서	● (부,모,학생)	● (보호자,학생)	● (학생)	● (학생)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발행
영주권 사본	● (부,모,학생)					해외공관장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부,모,학생 기준으로 각각 1부씩 제출]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학생)			외국인은 가족관계등록 부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기관 이 발행하는 증명서
전 가족 주민등록말소 등본 [또는 재외국민 표기가 된 주민등록등본 (영주교포자녀 만 해당)]	● (부,모,학생)		● (학생)			
외국인 국적증명서 (외국인등록증,시민권사본)			● (학생)			입학학년도 개시 전까지 제출
지원자종합기록표<별표1>, 외국학교 조사표<별표2>, 학력조회동의서<별표3>	●	●	●	●		본교 소정양식
재정능력 입증서류			●			
재정보증서약서<별표4>			●			본교 소정양식
재직사실조회동의서<별표5>		●			본교 소정양식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 서류는 각 1부씩 제출
(제출서류를 완비하여 서류접수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 **누락서류가 있을 경우 접수 불가**)
- ※ **상사직원의 경우 보호자 재직(경력)증명서에 소속부서, 직위, 파견국가명, 파견기간이 함께 명시되어야 함**
- ※ 정부의 초청 및 추천에 의해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는 정부기관 초청 또는 추천서를 첨부
- ※ 지원자 종합기록표<별표1>, 외국학교 조사표<별표2>, 외국학교 학력조회 동의서<별표3>, 재직사실 조회 동의서<별표5>는 본교 소정양식에 기재하여 심사서류와 함께 제출
- ※ 부모의 이혼사실이 있는 경우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지원자 명의의 기본증명서, 지원자의 입양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자의 입양관계 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 ※ 재정능력 입증서류 (기타 외국인만 해당 - 재정보증인은 지원자의 부 또는 모여야 함)
 - 지원자 본인 또는 재정보증인의 **미화 \$20,000 이상** 은행 예금잔고 증명서(입학 후 1개월 이상 계속 예치)
 - 재정보증인 명의의 은행 예금잔고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정보증인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해당국 가족관계증명서를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공증하여 제출)

제 출 서 류 명	기타 재외국민					비 고
	유학자의 자녀	강의 및 연구파견 요원의 자녀	선교파견 요원의 자녀	외국현지 취업자 자녀	자영업자 자녀	
초·중·고등학교 졸업(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학생)	● (학생)	● (학생)	● (학생)	● (학생)	국내학교 및 재외한국학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전입, 전출일 명시) 제출
유학사실 증명서 (석·박사과정 재학증명서)	● (보호자)					
소속 기관장 추천서		● (보호자)				
소속 당회장 추천서 및 선교파견 사실 확인서, 선교사 파송기관 확인서(각 1부)			● (보호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원교단에 한함
보호자 재직(경력)증명서 [외국근무(체류)기간 명시]		● (보호자)		● (보호자)		본사 인사권자 발행
해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 (보호자)	● (보호자)	
지원자격 기간의 세금납입 증명서 [외국정부가 발행한 법인세, 소득세 납입증명]				● (법인세, 소득세)	● (소득세)	필수서류이며 미제출시 접수불가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해외거주사실 확인서)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여권사본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출입국 사실증명서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가족관계증명서 [부,모,학생 기준으로 각각 1부씩 제출]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주민등록등본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부,모,학생 모두가 한 세대안에 있는 경우 1부만 제출
지원자종합기록표<별표1>, 외국학교 조사표<별표2>, 학력조회동의서<별표3> [본교 소정양식]	●	●	●	●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서류는 각 1부씩 제출
(제출서류를 완비하여 서류접수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 누락서류가 있을 경우 접수 불가)

※ 지원자 종합기록표<별표1>, 외국학교 조사표<별표2>, 외국학교 학력조회 동의서<별표3>는 본교 소정양식에 기재하여 심사서류와 함께 제출

※ 부모의 이혼사실이 있는 경우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지원자 명의의 기본증명서, 지원자의 입양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자의 입양관계 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 외국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국·공립학교 발행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 사립학교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 제출 시

1) 학교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p.16 재외 한국학교 발급서류 제외]

2)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이 속한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거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됨.

가)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국의 정부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원본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사립학교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는 공증받은 후에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신청 할 수 있음)

▣ 유학비자가 필요한 외국인의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기타 외국인만 해당)

구 분	구 비 서 류
재정보증인의 학비부담 [재정보증인은 지원자의 가족 (부 또는 모)이어야 함]	① 지원자 본인 또는 재정보증인의 재정보증서약서 ② 지원자 본인 또는 재정보증인 명의의 미화 \$20,000 이상 은행잔고증명서 (입학 후 1개월 이상 예치) ③ 재정보증인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국 가족관계증명서를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공증제출, 재정보증인 명의의 은행잔고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

※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에 대한 유의사항

1. 재정보증서약서 양식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부터 교부함.
2. 은행잔고증명은 **입학일 기준으로 1개월 이후(2018.4.1.)까지 미화 \$20,000 이상**이 계속 예치
되어야 합니다.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함)

※ 표준입학허가서는 (예치금)등록완료 후부터 발급 가능

12. 2021학년도 중고교 과정 해외이수자 (정원 외 2%) 변경 예고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른 202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변경 예고입니다.
- 2021학년도부터 아래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지원 가능합니다.

가. 202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공통 지원자격 변경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의 재외국민 및 외국인(정원외 2% 선발) 전형의
지원자격을 다음과 같이 표준화함

가) 학생 이수기간은 3년 이상으로, 체류기간은 학생의 경우 3/4 이상, 부모의 경우 2/3 이상으로 설정

나) 학생·부모의 신뢰보호 및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2020학년도까지는 대학 자율로 시행

구분	2020학년도까지	2021학년도 이후
학생 이수기간	2년 또는 3년 이상 등 대학 자율 실행	고교 1년 포함 중·고 3년 이상으로 표준화
해외 체류기간	대학 자율 설정	[학생]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부모]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나.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구분	내용
해외근무자의 정의	역년(曆年, Calendar year) 3년(1,095일) 이상의 해외 근무 또는 사업/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자
해외근무자의 자녀의 정의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해외재학기간의 정의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학기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의 1개 학년으로 함. 졸업한 자의 경우는 졸업일자까지를 1개학년으로 정의함
외국체류일수 조건	해당 전형의 지원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특례 해외재학기간의 각각의 1개 학년 기간마다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3분의 2 이상을, 학생 본인은 4분의 3 이상을 외국에 체류해야 함
제출서류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초등학교 재학 또는 성적증명서(해외고 졸업자에 한함) 중학교/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중학교/고등학교 성적증명서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여권 사본(부모, 학생) 재외국민 등록부 또는 해외거주사실증명서(부모, 학생) 해외거주사실증명서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해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세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 지원자 종합기록표 작성 시 유의사항

지원자 종합기록표 작성은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조한 후 흑색볼펜으로 사용하여 바른 글씨로 기재하여야 하며, 원서상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1. 수험번호, 모집단위는 인터넷 원서접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2.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호적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기재
3. 자격구분 : 지원자의 해당란에 ✓표로 표기
4. 지원학생 기재란
 - 가. 학교명 : 초등학교부터 최종 재학한 학교까지 순서대로 기재
 - 나. 재학기간 : 재학한 학교의 재학기간 및 재학연수 기재
 - 다. 학교소재지 : 재학한 학교의 국가명 및 도시명 기재
 - 라. 국내 학교에 해당하는 학년, 학기 : 재학한 학교 과정을 —로 표기
 - 마. 총 재학기간 : 총 재학한 기간을 기재
 - 바. 외국학교 재학기간 : 총 재학한 기간 중 외국학교 재학기간만 기재
 - 사. 국내학교 재학기간 : 총 재학한 기간 중 국내학교 재학기간만 기재
 - 아. 교포학생 기재란 : 지원자가 교포일 경우에만 기재
 - 자. 외국인학생 기재란 : 지원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만 기재
5. 부모 기재란 (12년 전 과정 해외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은 작성 불필요)
 - 가. 부, 모 성명은 호적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기재
 - 나. 외국거주기간 : 외국에 거주한 기간 및 거주 년 수 기재
 - 다. 소재지 : 거주한 외국의 국가명 및 도시명 기재
 - 라. 학생의 국내학교에 해당하는 학년, 학기 : 부모가 외국에 거주할 당시 학생이 재학한 외국학교 과정을 —로 표기
 - 마. 교포 : 부모가 교포일 경우에만 기재
6. 최종귀국일 : 출입국사실증명서상에 기록된 학생, 부, 모의 최종귀국일을 기재

지원자 종합기록표(예시)

수험번호	모집단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핸드폰)	국적	영주권 취득일 (교포학생)	시민권 취득일 (외국인학생)
		김승실	981010				
자격구분 선 택	<input type="checkbox"/> 영주교포 자녀 <input type="checkbox"/> 공무원 자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사직원 자녀 <input type="checkbox"/>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input type="checkbox"/> 유치과학자/교수요원 자녀 <input type="checkbox"/>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input type="checkbox"/> 유학자 자녀 <input type="checkbox"/> 강의 및 연구파견 요원 자녀 <input type="checkbox"/> 선교파견 요원 자녀 <input type="checkbox"/> 현지회사 근무자 자녀 <input type="checkbox"/> 자영업자 자녀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 <input type="checkbox"/>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외국인, 결혼이주민)						

■ **지원자 기재란** (재학한 학년 및 학기를 줄긋기(—)로 표시하세요)

학교명	재학기간		소재지		국내학교에 해당하는 학년 / 학기																										
	기간	재학년수	국가명	도시명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봉현초등학교	2006. 3. 2. ~ 2012. 2. 18.	6년 개월	한국	서울																											
구암중학교	2012. 3. 2. ~ 2015. 2. 14.	3년 개월	한국	서울																											
SAINT CLAIRE HIGH SCHOOL	2015. 3. 2. ~ 2017. 2. 20.	2년 개월	필리핀	마닐라																											
서울고등학교	2017. 3. 2. ~ 2018. 2. .	1년 개월	한국	서울																											
	~	년 개월																													
총 재학기간	12년	개월	외국학교 재학기간		2년						국내학교 재학기간						10년						개월								

■ **부모 기재란** (학생의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전 과정 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은 기재할 필요 없음)

학교명	외국거주기간		소재지		국내학교에 해당하는 학년 / 학기																										
	기간	재학년수	국가명	도시명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부(父) 성명 (김대학)	2015. 2. 14. ~ 2017. 2. 20.	년 개월	필리핀	마닐라																											
 ~	년 개월																													
 ~	년 개월																													
 ~	년 개월																													
교포	영주국() 영주권번호()		외국인		국적 ()		시민권번호 ()		시민권취득일 ()		년		월		일																
모(母) 성명 (이정보)	2015. 2. 14. ~ 2017. 2. 20.	년 개월	필리핀	마닐라																											
 ~	년 개월																													
 ~	년 개월																													
 ~	년 개월																													
교포	영주국() 영주권번호()		외국인		국적 ()		시민권번호 ()		시민권취득일 ()		년		월		일																

■ **최종 귀국일 기재란**

학 생	2017년 2월 20일	부	2017년 2월 20일	모	2017년 2월 20일
-----	--------------	---	--------------	---	--------------

외국학교 조사표

■ 외국학교 관련 필수 기재사항

학교명	주소	팩스번호	전화번호	E-MAIL주소	홈페이지 URL
	(학제) - -				
	(학제) - -				
	(학제) - -				
	(학제) - -				
	(학제) - -				
	(학제) - -				

- 1) 학교는 외국 소재 초·중·고교만 기재하고, 해당 학교의 공식명칭을 기입해야 합니다.
- 2) 팩스번호와 전화번호는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반드시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예) 한국 82-2-820-0021
- 3) 학제는 외국학교 초, 중, 고 학제를 기입해야 합니다. 예) 한국의 경우 6(초)-3(중)-3(고)

2017 년 월 일 지원자 : (인 또는 서명)

SOONGSIL UNIVERSITY

Sangdo-ro 369, Dongjak-gu, Seoul. 06978, Korea(* 부분만 지원자가 작성)

Tel : +82-2-820-0021
Fax : +82-2-820-0022
e-mail : anjw1999@ssu.ac.kr

Date :* **제출일자** _____
School Name : (영문)* _____
School Address : (영문)* _____
School Phone :* _____, Fax :* _____, E-mail :* _____
Subject : Transfer Student Information

To whom it may concern :

We are pleased to have the following individual, (*학생이름 _____), transferred from your school, studying here at Soongsil University. Your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are appreciated and will be held confidentially. For your reference, the student's Letter of Agreement is below.

If possible, a response from your office by fax will greatly help to expedite our processing of this individual's application. Thank you for cooperation.

Sincerely yours,

Oung-Rak Oh, Ph.D.
Dean of Admissions
Soongsil University

LETTER OF AGREEMENT

To whom it may concern :

I have applied to Soongsil University in Seoul, Korea for the 2018 academic year.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request your full assistance to Soongsil University when they contact you regarding verification of enrollment and transcripts.

Written by applicant (지원자가 기록)	Verified by previously attended school (해외 학교 담당자가 기록)
Date of birth: * _____	<input type="checkbox"/> Correct <input type="checkbox"/> Incorrect
Date of admission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 _____	<input type="checkbox"/> Correct <input type="checkbox"/> Incorrect
Date of graduation (transfer to another school): * _____	<input type="checkbox"/> Correct <input type="checkbox"/> Incorrect
Name and Signature * _____ Date * 제출일자 _____	Additional comments : _____ Printed Name and Signature : _____

재정보증 서약서

1. 지원자 인적사항

성명(Name) : 한글(Korean) _____ 한문(Chinese) _____
영문(English) 성(Last name) _____ 이름(First name) _____
국적(Nationality) _____
외국인등록번호(Alien Registration No.) _____

2. 귀하의 유학경비를 부담할 개인이나 기관명을 쓰시오

Indicate the person(including yourself) or organization that will be responsible for your tuition fee and living expenses).

개인 또는 기관명(Name) : _____
관계(Relationship) : _____
직업: 개인인 경우(Occupation) : _____
주소(Address) : _____
전화번호(Phone No.) : _____

* 본인은 상기 지원자의 유학기간 중 일체의 경비부담을 보증합니다.

I guarantee that I will be responsible for the above-named applicant's tuition fee and living expenses for the duration of the whole program.

이름(Name) : _____

서명(Signature) : _____

연월일(Date) : ____/____/____
월(Month) 일(Day) 년도(Year)

※ 재정능력 입증서류

- 지원자 또는 재정보증인의 미화 \$20,000이상 은행 예금잔고 증명서(입학 후 1개월 이상 계속 예치)
- 재정보증인과의 가족관계를 입증가능한 해당국 가족관계증명서(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공증, 재정보증인 명의의 은행잔고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본교수험번호 :

수험생 성명 :

재직사실 조회 동의서
(해외상사직원)

회사명	해외투자 신고서에 기재된 회사명과 동일하게 기재
회사주소 및 연락처 (한국 본사 인사팀)	

재직자 명		재직자 직위	
연락처(전화번호)		연락처(휴대폰번호)	
E-mail			
재직기간	자격인정기간		

재직사실 동의

1. 본인은 이 동의서를 고의적인 허위사실 기재나 대리 작성이 아닌 오직 사실에 입각하여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2. 본인은 송실대학교가 본인의 재직사실을 조회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며, 귀교가 이 재직사실 조회 동의서와 관련하여 내용 확인을 요청할 경우 협조할 것입니다.

2017 년 월 일

재 직 자 성 명 : _____(서명)

송실대학교 총장 귀하

【안내부서 및 전화번호(대표전화 02-8200-114)】

안내 및 문의	안내부서	전화번호	건물위치
입학관련 안내	입학처 입학관리팀	02-820-0050~4	신양관 1층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입학처 입학사정센터	02-820-0011~2	
휴·복학 등 학적 안내	교무처 학사팀	02-820-0151~4 02-828-7401~3	
수강신청 안내			
전과 안내			
부전공 안내			
복수전공 안내			
교적이수 안내	교무처 교직팀	02-828-7405~6	
등록 및 등록금 안내	총무처 재무·회계팀	02-820-0184	
병사관련 안내	총무처 예비군연대	02-820-0180	미래관 1층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안내	학생처 장학팀	02-820-0167	학생회관 5층
ID카드(학생증) 발급 및 민원안내	학생처 학생서비스팀	02-820-0068~9	
생활관(기숙사) 입사 안내	제2생활관(Residence Hall)	02-2621-0100, 0200,0300,0400	레지던스홀 1층
장애학생 지원 안내	장애학생지원센터	02-820-0060	조만식기념관 1층
대학 및 학과안내	인문대학 사무실	02-820-0303	-
	자연과학대학 사무실	02-820-0403	
	법과대학 사무실	02-820-0463	
	사회과학대학 사무실	02-820-0492	
	공과대학 사무실	02-820-0603	
	IT대학 사무실	02-820-0932	

※ 부서 위치는 부서이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본교 모집단위별 안내 : http://www.ssu.ac.kr/web/kor/edu_a 참조

【교내 건물 배치도】



“진리와 봉사를 세계로”

<http://www.ssu.ac.kr>

- 1 베어드홀 (Baird Hall)
- 2 경상관 (Economics & Business Building)
- 3 문화관 (Community & Cultural Center)
- 4 안익태기념관 (Ahn Eaktai Memorial Hall)
- 5 형남공학관 (Hyungnam Memorial Engineering Building)
- 6 교육관 (Education Building)
- 7 백마관 (White Horse Building)
- 8 한경직기념관 (Reverend Han Kyungchik Memorial Hall)
- 9 신앙관 (Shinyang Hall)
- 10 벤처중소기업센터 (Entrepreneurship & Small Business Center)
- 11 진리관 (Veritas Hall)
- 12 조만식기념관 (Jo Mansik Memorial Hall)
- 13 한국기독교박물관 (The Korean Christian Museum)
- 14 중앙도서관 (Central Library)
- 15 연구관 (Faculty Research Building)
- 16 Cumming Hall
- 17 Global Brain Hall
- 18 Residence Hall
- 19 전산관 (Computer Science Institute)
- 20 미래관 (Vision Hall)
- 21 정보과학관 (Information Science Building)
- 22 웨스트민스터홀 (Westminster Hall)
- 23 학생회관 (Student Union)
- 24 창익관 (Genesis Hall)
- 25 대운동장 (Main Stadium)
- 26 테니스장 (Tennis Court)
- A 정문 (Front Gate)
- B 중문 (Middle Gate/Main Parking Entrance)
- C 남문 (South Gate/Parking Entrance)
- D 북문 (North Gate)
- E 조만식기념관 지하주차장진입로 (Parking Entrance)

【교통편(지하철)】 지하철 7호선 송실대입구역 ③번 출구
(③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학교 정문입니다)



【본교 정문】

송실대학교 입학처

06978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전화 (02)820-0050~4(입학안내)

팩스 (02)820-0022

<http://iphak.ssu.ac.kr>



송실대학교